

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위촉위원의 임기) (생략)	제4조(위촉위원의 임기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설>	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